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손 영 우*

본 논문은 소위 ‘자코뱅주의(jacobinisme)’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기원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결사 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인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결사라는 ‘논리상의 이단자’를 처단하려는 정치철학적 요구와 신생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장인 중심의 봉건적 생산조직을 노동자 중심의 자본주의적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요구의 중첩이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장인들의 봉건적인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부장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혁명정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적 민주주의 사상이 대의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자본소유자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가 지속되는 19세기에도 이러한 결사 금지 정책은 그 본질적 이념은 달리 한 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변질된다.

이에 필자는 혁명시기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성격을 인민주권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를 구분하여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인민주권적 요소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원초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토크빌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달리 현대 시민사회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주제어 : 프랑스 혁명, 시민사회, 국가주의, 인민주권, 자코뱅주의

* 파리 8대학 정치학과 박사논문 과정

1. 서문

시민사회와 관련된 프랑스인들의 강한 정신적 특성은 “국가에 대해 총체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Barthélemy 2000: 29; Touraine 1999: 48)”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체제 역시 프랑스는 1980년대 복지국가 체계를 대폭 수정한 독일이나 영국과 달리,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지되어 온 나라로 유명하다. 더욱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가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시민사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모습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우파에 속하는 프랑스 시락 정부의 라파랑(J.P. Raffarin) 수상이 나서서 “국가는 더이상 보편적 이해를 독점하지 않는다. 시민사회 역시 보편적 이해의 위탁자이다(Raffarin 2002: 106-107)”라고 국가 기능의 시민사회의 위탁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소위 ‘자코뱅주의(jacobinisme)(Rosanvallon, P. 2004; Bardi, B. & Birnbaum, P. 1982)’라고 불리는 이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는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프랑스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는 토크빌 같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자에 의해 흔히 절대군주제의 소산으로 프랑스 혁명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Tocqueville). 본 논문은 이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핵심으로 한다. 즉 절대군주제 시절의 권위주의적 국가형태는 프랑스 혁명 초기과정에서 제기된 직접민주주의적인 인민주권적 국가론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고, 이것이 다시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부르주아에 의해 권위주의적 요소와 인민주권적 요소가 중첩되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사회보장형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가지며 또한 사회운동은 국가에 저항을 하지만, 국가의 영역 자체를 축소하거나 반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국가중심의 사회 요구 운동’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렇게 중앙집권화 된 국가의 성격과 이러한 국가형태가 시민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또한 이러한 절대군주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국가형태가 여러 번에 걸친 인민 혁명(1789, 1848, 1871)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치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결사체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모든 서구 나라에서 가장 낮은 시민결사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Barthélemy 2000: 19)”이라는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사회의 특징을 밝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인민주권적 요소를 밝힘으로써 국가가 항상 시민사회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확대된 국가라고 해도 시민사회와 함께 조응·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절대왕조를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혁명시기 인민들의 결사방식에 대한 서술과 갈등,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요소와 인민주권적인 요소의 중첩과정과 이러한 중첩이 제도권으로 수면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프랑스 시민의 단면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절대왕정시기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시민사회

1)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국가

맑스는 이러한 절대군주의 국가 관료제는 부르주아의 계급지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어디에나 빠짐없이 존재하는 상비군, 경찰, 관료, 사법기구 등의 기관들을 가진 중앙집권화 된 국가권력은 봉건제에 대한 중산계급의 투쟁에 필요한 강력한 무기로서 태동하는 중산계급 사회에 봉사하였던 절대왕정의 시대로부터 출현하였다(Marx 1851: 168)”고 전하고 있다.

절대주의 국가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의 중 귀족계급과 부르주아지 간의 중재자인가 부르주아의 도구인가 아니면 귀족의 새로운 정치적 철갑인가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제쳐놓고 이 글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의 중앙집권성과 권위주의적 성격에 집중한다.

일단 잉여창출 메커니즘으로서의 농노제는 촌락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법적 강제를 융합시켰는데, 이전의 봉건제에서 공납이 화폐지대로 바뀌는 금납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농민에 대한 정치 경제적 억압의 세포단위가 크게 약화되어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발전의 중국은 ‘자유노동’과 ‘계약임금’이었다). 이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이러한 위기를 군사적 행정적 힘에 의거해서 중앙집권화하고, 정치적 법적 강제라는 새로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강제가 촌락수준에서는 약화되었지만, ‘국가’ 수준에선 집중 강화된 것이다(Anderson: 16-17). 그 결과 국왕의 권력기관이 강화되어 사회계서제의 하부에서 농민과 평민대중들을 억압하는 정치적 기능이 유지되었다. 이 절대주의 국가

의 역할은 농노제에서 벗어난 농민들을 새로운 형태의 예속과 착취 속으로 밀어넣는 데서 귀족지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특히 제국주의적 정규군의 확장을 위해 마련된 ‘타이유(taille)’세¹⁾로 일컬어지는 조세정책은 농촌과 도시 대중들에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귀족과 성직자에 대해선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민중들의 고향을 찌내는 체계였다(Anderson: 89, 100). 더욱이 1604년의 뵈레뜨(Paulette)세의 도입으로 관직보유자가 관직구입 가격에 대한 매년 일정 비율의 액수를 지불함으로써 관직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관직매매의 공식화를 이루기도 한다(Ibid.: 97). 특히 제국주의적 전쟁의 실질적 비용²⁾은 빈민들이 졌는데, 전시 절대주의가 가한 조세압박은 도시와 농촌 대중들의 절망적인 반란의 대물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Ibid.: 101). 이러한 도시와 농촌 대중들의 반란은 1630년의 디중, 엑스, 뵈와띠에에서의 도시반란, 1636-37년에 앙구르와, 생똥쥐, 뵈와뚜, 페리고르 지방의 농민반란, 1639년에 노르망디의 하층민들과 농민반란, 프롱드 난, 그리고 1674-75년 간 귀엔느와 브레타뉴에서의 농민반란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절대국가는 이를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진압한다.

그리하여 이 절대왕정 국가의 성격은 귀족 계급에 대한 특혜와 농촌과 도시대중의 수탈에 근거했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자본주의 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1) 이 타이유세금 제도는 국왕 타이유세(taille royale), 군사 타이유세(taille des gens d'armes), 대인 타이유세(taille personnelle), 대물 타이유세(taille réelle)로 변화 혹은 분화되지만 그 본성을 변화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Anderson 책을 참조.

2) 30년 전쟁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개입은 조세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는데, 1610년에 국가의 징세대리인들은 타이유 세로 1,700만 리브르를 거두었다. 하지만 1644년의 세금 징수액은 4,400만 리브르로 세 배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세금의 총액은 1630년 이후 십년간 네 배로 증가하였다(Anderson: 100-101).

2) 혁명 전 프랑스 사회의 인민 결사들

중세 이후 18세기까지 다른 대부분의 유럽사회에서처럼 프랑스에도 인민 결사의 주요형태는 직업이나 공동이익집단(communales)의 결사체였다.³⁾ 즉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거나, 그 특권에 관련된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는 원리로 운영되는 모임이었다. 이 당시 결사는 크게 직업모임, 종교적 콩프레리(les confréries)의 모습을 띠었는데, 이러한 결사를 지배하였던 것은 교회였다(Defrasne 1995: 9). 기본적인 공동체는 교인들 간의 모임인 소교구(paroisse)였는데, 이것은 같은 지붕 혹은 공동 토지에서 일하는 가족들 간의 공동선서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소교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콩프레리⁴⁾이다. 콩프레리 역시 교회에 의해 통제되었는데, 콩프레리는 12세기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처음엔 신앙인들이 공동신앙생활과 행사를 위하여 형성되다가 14-15세기 들어서면서 조합이나 길드, 혹은 자유직 직업인들이 주로 종교적 생활을 위해 구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과부, 고아들에 대한 상호책임, 구성원의 빈곤이나 재난, 질병에 대해 상호 부조하는 책임 또한 지니고 있었다. 후에 이러한 상호부조적인 성격이 특화되면서 공제회(les associations de secours mutuel)로 발전되기도 한다.

한편 직업모임에는 대표적으로 조합(corporation)을 들 수 있는데, 13세기부터 존재하였던 조합은 봉건적 작업장 내에 특성을 포함하고 있

3) 여기에서 인민 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귀족들의 살롱이나, 정치클럽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4) 조합체계(le système de corporation)와 약간의 상이함을 갖는데, 이것은 한 직종에 여러 개가 존재하기도 하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하나의 콩프레리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인과 직공이 혼재되지는 않았으며, 직공들은 자신들의 콩프레리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콩프레리의 역할 중 상호부조 역할은 이후 특화되어 공제회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후에 상호부조적인 성격이 강조되면서 경우에 따라선 비종교 모임도 존재했다.

었다. 그 당시 작업장은 보통 장인(maitres), 비숙련공 혹은 직공(valets, compagnons), 그리고 견습공(apprentis)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조합은 작업장 내의 구성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장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작업장을 소유한 자들을 일컬으며, 이들은 장인조합 혹은 길드(guild)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장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직공과 견습생들은 직공조합(compagnonnages)을 구성하였다. 이 당시 대부분의 특권은 장인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고, 이들은 직공들을 엄하게 다루는 일종의 닫힌 카스트 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직공들은 솔로몬, 가보트의 아이들(les enfants de Salomon ou Gavots),⁵⁾ 자크의 아이들(les enfants de Jacques)같은 비밀결사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직공조합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장인의 폭행을 비판하거나 고발하기도 하고, 1539년 리옹의 직공들은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직공들 간의 경쟁, 장인체계에서의 위계에 따라 약화된다.

이러한 조합은 귀족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18세기초 프랑스에서 그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그들은 점점 노동이나 상업 자유의 장애물처럼 여겨졌다. 장인들이 위탁받은 물건의 중간 이익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장인들에 의한 직공들과 견습생들의 가부장적인 귀속은 봉건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자 자유로운 상업교류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봉건시대에 명성 있었던 직업결사가 신생 산업자본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가톨릭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상들이 18세기에 무르익으면서 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5) 여기에서 솔로몬, 가보트, 자크는 장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3. 프랑스 혁명 초기의 민주주의 사상과 시민사회

1) 인민주권적 민주주의 개념과 국가적 개인주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인 토크빌의 시민사회론은 “최초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중화 수준을 이론화한 분석(Barthélemy 2000: 29)”으로 알려져 있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분석은 단지 미국이나 프랑스에 대한 시민사회 역사분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슈미터(P. Schmitter) 같은 많은 시민사회 학자들의 시민사회론의 뿌리로 작용하면서 그 일반성을 획득해 나갔다.

토크빌은 『구체제와 혁명(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에서 프랑스 역사의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중앙집권화에 대해 분석한다. 그의 말을 빌자면,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는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제의 산물로서 혁명 이후에도 지속된 구체제의 정치제도(Tocqueville 1856: 127)”이다. 구체제 속에서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모든 중간매개권력을 제거해버렸고, 중앙권력과 개인들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권력은 사회적 기제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공공 생활의 유일하고 필수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비록 혁명을 통하여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화가 만들어내는 전제주의로 귀결된 것이다.

토크빌의 ‘민주주의적 전제주의(despotisme démocratique)(Ibid.: 253)’라는 표현은 토크빌이 1848년 혁명의 성과로 탄생한 보통선거제가 보나파르트와 함께 나폴레옹 3세가 제2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한 이러한 추세로 다시 1852년 군주제를 부활하게 하는 기제

로 사용되는 괴이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결사의 자유가 배제된 채 치러지는 보통선거는 토크빌의 눈에서는 인민을 동원하여 전제군주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식의, 그야말로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하면서 문제시했던 ‘다수의 폭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조건의 평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물질적 복지를 가져다주고 인민주권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물질적 만족에 민주주의적 열정이 한정되었을 때 귀결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전제주의였고 그것은 새로운 노예상태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토크빌은 자유에서 찾았다. “자유만이 이러한 종류의 사회 속에서 자연적이고 개인들을 옥죄고 있는 악덕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자유만이 시민들을 고립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서로서로 접촉하도록 이끌어 주며, 공통의 관심사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설득할 필요성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일깨워 준다. 자유만이 금전에 대한 숭배와 잡다한 개인사에서 시민을 구해낼 수 있으며 그들의 상위에 그리고 그들의 곁에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Ibid.: 75). 자유가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제주의로 귀결된다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하지만 토크빌의 이러한 분석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특성 중 인민주권적 요소와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치적 매개체와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대립적인 요소로 보고 중앙집권화된 국가 전체를 문제 삼는데 한계를 지닌다. 즉 시민사회의 정치적 매개체를 중앙집권화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억압하였다는 분석은 올바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민주권적 요소까지 배격하여 ‘국가와 맞서는 개인’을 소홀히 하고 시민사회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가능성을 배제하

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인민주권적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선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프랑스 혁명 당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뜻하였다(Soboul 1989: 340-341). 오늘날의 대의적 민주주의를 사람들은 ‘대의제(Régime représentatif)’라고 구분하였고, 보통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였는데, 이 개념은 1789-91년 ‘애국파(patriotes)⁶⁾’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민중들, 즉 상퀼로트(Sans-culottes)들의 이념이기도 하였다. 이 개념은 양도 불가능한 정치체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주권 원리에서 표현되는데, 이 개념은 대의제를 거부한다. 특히, 프랑스 혁명의 연구자인 알베르뜨 소불(Albert Soboul)교수는 『프랑스 혁명 역사사전(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데, 그는 이(직접)‘민주주의’는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도 그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루소는 인민주권의 개인성과 양도불가능성을 제기하는 의미로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représentants)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집행자(commissaires)에 불과하며, 따라서 무슨 일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Rousseau 1762: 3편 15장; Soboul 1989: 340)”라고 주장하였고,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체의 각 구성원인데, 그것은 보통선거권이라며 “일반의지가 성립되는데 반드시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투표는 계산되어야 한다. 제외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성은 깨진다(Rousseau 1762: 3편 4장; Soboul 1989: 340)”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의지가 제대로 표출되려면 투표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6) 프랑스 혁명 당시 한 분파

반대로 행정권은 인민의 일반성에 속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권한은 개별적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중간적인 매개체일 뿐이며, 정부와 그 구성원, 법률가들은 단지 단순한 ‘주권의 관리자(officiers)’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인민들이 제한하고, 변경하고, 소환할 수 있는 단순한 위임(commission)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Rousseau 1762: 4편 1장; Soboul 1989: 340-341)”. 그러나 “주권자는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인민의 대다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부른다(Rousseau 1762: 4편 3장; Soboul 1989: 341)”.

또한 소블 교수는 단지 루소의 ‘이론’뿐만 아니라, 혁명 당시 상황 속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내는데, “1789년 9월 5일에 페티옹(Petion)⁷⁾은 제헌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결사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은 법 제정에 가담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각자는 자신의 특수한 의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의지들의 연합은 진실한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민은 대표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임무와 권력을 준 사람들의 의지에 종속되는 위임자들(mandataires)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의미로 1789-1790년 파리의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위임자들’이라고 불렀다(Soboul 1989: 341)”라며, 그 당시 인민주권론의 특징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 위임자들은 시민들의 강제위임(un mandat impératif)을 받은 만큼 선거구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소환을 받아 해임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어떤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되며 그들의 회합은 독자적인 토론권을 갖지 못하였다(Ibid.)”고 밝힌다. 또한 소블 교수는 이러한 위임자 간의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7) 삼부회 의원이었으며, 지롱드파 소속인 페티옹은 이후 1791년 파리시장을, 1792년에는 프랑스 혁명의회였던 국민회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그 회합이란 파리 구들간의 결의사항을 조정하는 단순한 위임자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렇게 도출된 의사는 특정 구의 의지가 아니라 진실된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다. 그 대표들은 단순한 위임관으로서 여러 구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책임을 부여받았다 (Ibid.)”고 설명하고 있다.

1792년 8월 10일 사건 이후에 상켈로트들이 국민의회의 의원들을 위임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관이 현실적인 규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1792년 8월 10일 파리에 기존 시자치체를 해체하고 그것을 ‘봉기코뮌’으로 대체하고, 1793년 5월 28-29일에 혁명적인 방식으로 ‘코뮌’을 다시 설정했을 때도, 그들은 코뮌을 그러한 민주주의관에 입각하여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는 프랑스와 같이 큰 나라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게 여겨졌고, 보수파 귀족세력은 물론이고 온건파 부르주아 세력들에게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으로 혹은 위협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산악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꾸통(Couthon)은 1792년 9월의 학살사건이 터졌을 때 인민이 “법적으로 모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며 이를 비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91년의 헌법에는 “프랑스 헌법은 대의제이다. 그 대표자는 입법체와 국왕이다(1791년 헌법 3장 2조). 도에서 임명된 대표는 해당 도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의 대표이며, 그는 어떠한 위임으로부터도 배제된다(1장 1부 8조)(Soboul 1989: 342에서 재인용)”라고 명시된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흠잡을 데 없는 평등의 체제를 가리켰으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1793-94년 파리 민중들이었던 상켈로트들의 정치적 열망을 자극했다.

물론 이러한 급진적인 민주주의는 시에스나 콩도르세 같은 부르주아 혁명가들의 노력과 시도에 의해 근대민주주의로 길들여진다.⁸⁾ 하

지만 이러한 인민주권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끌로드 니콜레(Claude Nicolet)에 의하면, “국가의 공화주의 개념은 두 가지 수준에 위치해 있다. 하나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진정한 ‘공적인 것(la chose publique)’을 의미하며, 즉 보편적 이해의 보장과 보편적 의지로 규정되는 루소적 주권론의 의미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토 전체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규정하는 의무를 지닌 공권력의 총체를 의미한다(Nicolet 1982: 459). 또한 ‘공권력(pouvoirs publics)’이란 ‘공적 서비스(services publics)’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Ibid.)이었다.

특히 혁명이후 첫 번째 헌법인 1791년 헌법에는 인민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맞추었는데, 국가의 임무는 단지 개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곤궁에 처한 개인을 구호하는 것까지 이르렀고, 빈곤의 문제를 헌법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 헌법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사회에게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공적 부조와 공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국가와 사회의 임무로 간주되었다(Barthélemy 2000: 37).

그리하여 결국 “국가는 어떠한 권력이나 권리를 갖지 않고, 오직 유용한 기능을 행사하거나 집단에게 서비스를 행하는 의무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Nicolet 1982: 460).” 왜냐하면 ‘권력(pouvoir)’이란 말에는 국민 또는 인민주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법이나 국가에게 어떠한 ‘최고’라거나 ‘첫 번째’라는 형이상학(métaphysique)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Ibid.)”. 그러므로 “공화주의 국가는 매우 강하

8) 여기에선 시에스나 콩도르세의 근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음. 그에 대한 해설로 최갑수 2003을 참조.

고 그렇게 중앙집권화 되었지만, 전체주의적 국가는 아니었다. 즉 시민 전체를 위해 일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이나 혹은 집단 같은 특수한 의지에 우선할 수 없었다 (Ibid.)”.

하지만 반대로 ‘완강한’ 공화주의적 국가이념은 국가와 인민은 직접적으로 하나라는 인민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민과 국가를 연결할 중간매개체의 설 자리조차 빼앗기도 하였다. 주권이 공유되거나 분할될 수 없듯이 공화주의의 국가 역시 나뉘어 질 수 없었다. 결국 국가가 지리적으로, 즉 영토적으로 나뉘어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었다. 즉 결사 혹은 집단, 정당, 계급, 교회, 조합 같은 중간매개체에 우호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Ibid.). 특히 그 당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였던 직업단체들은 인민들의 직접적인 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이익집단으로 여겨졌다. “조합은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몇몇 사람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다수를 파괴하는 존재였다. 혁명적 입법부는 구체제적 제도와 관계를 하나씩 제거하였다(Bardout 2001: 75)”. 즉 집단의 특수한 의지는 구체제의 특권이자, 보편의지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었다. 그리하여 논리상 인민들의 의지를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수혜적인 국가’와 이에 매개체 없이 직접 맞서는 ‘개인’이라는 ‘국가적 개인주의(individualisme étatique)’가 탄생하게 된다(Mouriaux 1992: 10). 이렇게 토크빌의 경고처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인민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민주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민주권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제기하는 곳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결합가능성이 열린다. 특히 국가가 개인과 직접 관계한다는 국가적 개인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다시금 주권론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세계적 개인주권’ 혹은 ‘세

계적 시민주권' 이념으로 확장 가능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중앙집권적 공화주의 국가이념에는, 인민에 기반하고 인민의 기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곤궁에 처한 개인의 생계 문제에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인민주권적 요소가 존재하면서, 또한 중간매개체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야누스적인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적 요소는 절대왕정에서 부르주아 권력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지속된다. 이것은 또한 부르주아 민중 연합 혁명권력의 헤게모니가 부르주아로 넘어감을 뜻하기도 한다.

2) 혁명 당시 결사체 금지의 정치적 의미

혁명당시 조합과 이익집단의 결사 금지는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정치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즉 그 당시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조직의 변화'라는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1791년 3월 2일 알라르드의 법령(*le décret d'Allarde*)은 조합들(*les corporations*)을 폐지하였고, 같은 해 6월 14일 샤플리에 법(*la loi Le Chapelier*)은 공동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직업적 결사와 단결(*coalition*)을 금지하였다. 르네 모리오(R. Mouriaux)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의 자유, 이 두 자유들 중에 조정자들은 ‘노동의 자유’를 택하였고, 장인과 직공간의 관계를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만들었다(Mouriaux 1992: 10)”고 말한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엔, 혁명상황이 너무 숨가빴다.

알라르드 법령과 샤플리에 법은 보통 ‘그 강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결사를 금지한다는 비슷한 법'으로 취급되지만, 이 두 법안은 각각 역사적으로 다른 행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알라르드 법은 모든 결사를 겨냥한 법이 아니었다. 이 법은 단지 그 당시 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혁명정신과는 달리, 조합적인 특권을 누리 고 있던, 장인조합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 법은 원래 이 “장인조합의 본부에 일종의 영업세(la patente)를 부과하는 조세정책(Bardout 2001: 74)”을 통한 장인조합 규제법안이었고, 노동자 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법은 노동자 결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담고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자, 직공, 견습생들은 조합의 폐지를 희망했고, 반노예(demi-serfs)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citoyens)’이 되고자했다. 이렇게 1791년 3월의 알라르드 법령은 이러한 노동자, 직공, 견습생의 요구를 담은 구체적인 봉건적 조합들을 폐지하는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조합을 폐지한 알라르드 법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작용하고 있었다. 1789년 8월 이래, 직공들과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쟁하였다. 직물재단 직공들은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을 하기도 했고, 9월엔 해운운송 노동자들도 같은 목적으로 단결하였다. 제빵업 직공, 인쇄 노동자, 가발공장 견습생들도 시민으로서의 필요 조건을 요구하였다. 다양한 직종에서 결사의 생명력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결사의 물결은 1790년 8월 20일 “모든 시민은 평화롭게 결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욱 상승세를 탄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의 사고 한편에는 노동자들의 결사들도 장인조합처럼 산업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알라르드 법령에는 노동자 협회나 퐁프레리, 직공결사에 대한 문구는 없지만, 이후 파리 목수들의 파업을 계기로 의회에 모인 부르주아 들은 노동결사와 직공결사를 포함한 모든 직업결사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그리하여 알라르드 법령이 제정된 지 3개월 뒤인 1791년 6월 14일에 “같은 신분이나 직업 혹은 기업, 상점내의 시민들이 모일 때는 대표나 비서, 상근자를 둘 수 없고, 그들만의 공동이익을 위한 규정을 형성할 수 없다(Bardout 2001: 79)”는 내용의 샤플리에 법이 제정된다. 이 법의 실제적인 내용은 주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까지도 금지하는, 모든 실제적인 직업단체를 금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안 제정에 결사를 찬성했던 공화주의자들마저도 침묵한다⁹⁾.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침묵은 이들이 이후 거대한 산업화의 출현을 믿지 않았고, 노동자 대중과 자본의 소유자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불평등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Bardout 2001: 84)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르 샤플리에¹⁰⁾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당성을 밝힌다. 첫째, 직업 집단은 해체된 조합들의 재구성 의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노동자들의 결사를 정당화하는 상호부조 역시 국가를 대체해 간다는 논리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결사는 각기 다른 노동의 가치를 정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Bardout 2001: 81).

하지만 부르주아들의 본색이 드러난 르 샤플리에 법이 제정될 당시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법이 인가되자, 노동자들은 모든 주장을 중단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파업권을 감히 주장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혁명정부 하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1793-4년 상퀼로트

9) 르 샤플리에 법안은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주저하였으며, 당시 조합들의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한시적 법안으로 생각했던 공화주의파들의 소극적인 침묵으로 가결되었다(Bardout: 74-75).

10) 르 샤플리에에는 1789년 4월 삼부회의 대표로 선출되며, 나중에 자코뱅 클럽의 모태인 브레타뉴 클럽(Club breton)을 만들었으며, 국민의회에서도 대표로 선출된다. 그는 이후 모든 클럽, 결사, 협회 등 모든 정치적 존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1794년 4월 반역음모로 기소되어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들이 혁명에 중심에 있을 때 역시, 누구도 르 샤플리에 법 폐지를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고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은 혁명적 부르주아들과 하나의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은 ‘법과 국가의 전능(la toute-puissance de la loi, de l’Etat)’(이하 강조-필자)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핵심은 자본의 힘에 맞서 경제투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고,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었다. 1793-4년 노동자들의 관심의 핵심은 (혁명에 대한 외국 봉건세력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역부족인) ‘느려 빠진 수단(des moyens lents)’과 ‘허약한 무기(des armes debiles)¹¹⁾’였다. 비록 혁명적 부르주아들은, 주권법에 의해 인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사용했어야 할 국가력을, 귀족들을 길들이고 교회와 망명 귀족들의 재산을 탈환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국가에 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Bardout 2001: 84)”. 이처럼 알라르드 법령이 일종의 구체제 청산법이라면, 르 샤플리에 법은 자본주의 도입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결사권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직업집단과는 달리 정치협회(la société)의 형성과 회합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당시 정치협회(les sociétés politiques)는 정치적 교육과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특징과 그 양적 중요성으로 주요한 혁신으로 취급된다. 그것은 프랑스 정당의 역사에서 또한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 당파를 형성하고 ‘상퀼로트’라는 정치적 계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또한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실권 이후, 클럽은 갈등 중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의 근원이었다. 팡테옹(Panthéon)에 자리잡은 자코뱅 클럽에서부터 클리시(Clichy)¹²⁾의 왕권파, 반혁명 협회 등 많은 정치적 클럽들¹³⁾

11) 그 당시 구체제 왕족들의 일부는 망명하고 외국 봉건세력에게 도움을 호소하여, 프랑스는 외부세력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12) 파리와 인접한 북쪽에 있는 한 위성 도시 이름

13) 이러한 정치적 클럽은 그 후 지속되다가, 1849년 이후 2차 왕정 하의 정치적 탄압

이 탄생되기도 하였다(Defrasne 1995: 15).

이렇게 1789-1799년 동안 결사권(le droit d'association)에 대한 토론은 클럽, 정치협회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 토론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혁명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결사는 자연권에 속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영역에서 적합한 사교의 결과로 결사는 민주적 제도가 기능하는데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클럽과 정치협회의 입법성 증대는 의회주의자들을 걱정시켰는데, 특히 원칙상 더이상 조합주의자들이 아니었던 우파들은 이러한 증가를 염려하였다. 반대로 더이상 개인주의자가 아니었던 좌파는 그들에게 적합한 결사의 존재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개인은 더 이상 조합의 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롭고도 동시에 (시민에게는 정치적 삶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민주적인, 이중적인 혁명의 유산은 모순처럼 인식되고 존재하였다. 결국 1810년에 “20인 이상의 종교적, 문학적, 정치적 혹은 기타 단체는 정부의 허가 하에서만 결사할 수 있다(Bardout 2001: 99)”는 형법 291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시민결사에 대한 억압이 초기엔 장인들의 봉건적인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부장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지만, 초기 혁명정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소유자들의 착취가 지속되는 19세기에 이 이러한 결사금지 정책은 그 본질적 이념은 달리한 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변질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인민주의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는 오늘날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고,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을 통해 그 충만함은 자취를 감춘다.

4. 중앙집권국가의 프랑스 시민사회에 남은 잔영과 그 교훈

이러한 혁명의 정신과 110년간의 결사의 금지¹⁴⁾는 만개한 프랑스 시민사회에 거대한 잔영으로 남아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의무를 국가로 이월하게 하여 국가 개입주의가 만연하게 하였다. 물론 충분치 못한 사회보장을 이유로 몇몇 종교적 자선단체나 공제회가 허용되었지만, 혁명 헌법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의 빈곤의 문제는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가 국가로 이월되는 것은 또한 공화주의의 반교권주의(*la laïcité*)¹⁵⁾와 맞물려 있다. 혁명 이후 19세기 내내 부르조아들은 노동자들의 결사 이외에 또 하나의 다른 전선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권주의와의 대립이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결사를 금지하는 이유였는데, 이것은 교권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조합주의적 원리를 방어하고, 봉건적 후견제도의 형성에 찬성하고, 공권력의 간섭을 거부하는 개인적 자비를 실행하는 반혁명적 전통을 고취한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국가를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의 사회적 행위는 가톨릭 제도와 모임의 활동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792년 8월 18일 법령은 모든 종교적 집회를 폐지하였다(Barthélemy

14) 1901년 발텍-루소(Waldeck-Rousseau)는 1791년 르 샤플리에 법안을 폐지하고 프랑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위 발텍루소법안을 통과시킨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Bardout 20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라이씨테(*laïcité*)는 프랑스 공화국의 주요 원리 중의 하나로서, 가톨릭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정치와 사회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기원한 것으로 지금은 정치, 사회, 교육에서 모든 종교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상황에 따라 보통 무종교성, 비종교성, 반교권주의로 번역할 수 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면서 법제화된 '공립학교 내에서 이슬람 두건 및 종교적 상징 착용금지'도 이러한 정신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다.

2000: 40). 혁명은 새로운 공적부조 체계를 형성할 계획 없이, 귀족적 조정관에 의존하였던 과거 종교적 부조체계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사적으로 사회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왔던 종교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선 국가가 사회보장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아야만 했다. 또한 사상적으로도 달리하는데, 1848년을 전후하여 샤를 르 푸리에(Charles Fourier)와 피에르 르루(Pierre Leroux)의 저작의 ‘연대 (la solidarité)’라는 말도 가톨릭의 ‘자비(charité)’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한 정치적 철학적 용어였다(Barthélemy 2000: 50)고 한다. 이러한 교권주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공제조합(la mutualité)은 노동조합보다도 늦은 1898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¹⁶⁾가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공화국의 공고화였고, 이것은 또한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포함하는 두 가지 기획과 결합하였다(Barthélemy 2000: 34). 그것은 공적구호 분배의 중앙체계를 형성하는 기획과 비교적 이 영역에서 무게를 지니고 있던 가톨릭교회와의 투쟁 기획이었다. 그리하여 공적 보조는 사회보장 비종교화(laïcisation)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둘째, 토크빌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의 확장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매개체를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으로 단지 국가권력과 분리된 ‘자유로운 제도’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그 위치는 현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었고, 더욱이 새로운 복지국가의 점진적인 도입은 시

16) 이러한 국가개입주의가 단지 사회보장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알랭 투렌 교수는 이를 ‘프랑스적 예외’라고 일컬으며,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거대한 공기업, 이에 따른 비대화된 관료주의로 ‘통합적인 국가모델(Touraine 1999)’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국가모델은 성직자들의 정치간섭에 종말을 고하게 했고, 드레퓌스 사건의 발생이 가능하게 했지만(Ibid.: 45-46), 이 같은 방식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단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Ibid.: 77)하기도 한다.

민부분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단체간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협력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Barthélemy 2000: 33)".

프랑스에서도 국가와 결사단체가 대립하는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는 시민사회단체와 공권력 사이의 상호보완(la complémentarité)의 조직자가 되었으며, 비록 기독교와 긴밀한 연관을 맺긴 하지만 복지국가의 도입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존재한 사회 보건 활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엔 자선, 박애, 상호구조의 단체들의 사적인 활동은 줄곧 공적인 개입을 앞섰고, 자비와 도움의 정신은 결사단체의 첫 번째 원리였다. 또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형태를 지녔던 신생 노동운동과 결사단체의 압력이 존재했던 19세기에는 빈곤과 대중건강의 문제는 더이상 위협한 대중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과도 관련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의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개혁 운동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국가와 제도에 대한 저항적 형태의 운동인 ‘사회운동17)’이라는 형태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프랑스의 보수적인 가톨릭교와 결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민간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비제도적이고 ‘정치지향적’ 결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인민의 보편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인민주권 원리와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시민사회 원리와 대립하지 않는다. 만약 (국가의 크기

17) 보통 사회운동하면 그 특징을 그 ‘비제도성’에서 찾는 경우(알랭 투렌, 프랑스와 샤젤)가 많지만, 초기의 프랑스 사회운동을 보면 제도성과 비제도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당시의 특정한 정치적 상황 즉 정부의 억압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곤 한다. 또한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을 띤 정치정당인 녹색당의 출현은 그 구분 기준의 이론적 허약성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사회운동의 특징을 비제도성과 더불어 이념성에서 찾기도 하는데, 사회운동의 ‘사회’라는 개념 속에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와 무관하게)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축소시키고 인민주권을 확대한다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수월하게 반영될 가능성과 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민결사가 정치적 활동을 대리하는 매개체라면 시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인민주권 원리와 대립할 수 있지만, 시민 결사가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공론장이 되고 학습장이 된다면 오히려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으로 현대사회에서 시민 결사가 국가주의적 권위주의를 감시하고 인민주권 원리를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민주권 원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직접)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현대적 과제에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5. 결론

프랑스의 시민들의 결사를 금지하는 억압적인 성격과 시민들의 사회보장에 주요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화된 성격은 프랑스 혁명 당시 잠시 동안은 제외하고 20세기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혁명시기 직업 결사의 금지는 초창기에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혁명정신을 실현하고 구체제적인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지만,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체제 존속을 위해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결사 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인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이에 집단적 영향을 미치는 결사라는 ‘인민주권 논리상의 이단자’를 차단하려는 완강한 국가주의적 요구와 신생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장인 중심의 봉건적 생산조직을 노동자 중심의 자본주의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경제학적 요구의 중첩이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초기에는 장인들의 봉건적인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부장적 구

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초기 혁명정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적 민주주의 사상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요소는 근대적 대의적 민주주의로 혼합되어 지속되고, 자본소유자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가 지속되는 19세기에 이 이러한 결사금지 정책은 그 본질적 이념은 달리 한 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변질된다.

결국 이러한 프랑스적 특징은 현재 프랑스 시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결사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 간의 갈등은 시민들이 보나파르트부터 시작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으로 인해 한편으론 지방화를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에 익숙하고 또한 국가에 주요한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시민사회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은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중앙집권화를 분산화하는 민주화와 인민주권 강화에 대한 요구로 해석하면 통일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적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국가의 기능에 대한 측면이다. 80년대 유럽사회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유행하였던 신자유주의 ‘작은 국가’는 자본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극단화된 빈곤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민주권적 국가개념은 국가가 다시금 빈곤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둘째, 제기되었던 직접민주주의와 시민단체와의 결합에 대한 측면이다. 토크빌은 시민단체를 굳어진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적 중간매개체로 규정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직접적인 가상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제의 발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인 소통과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내다보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가 개인과 국가의 매개체가 아닌,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본래의 시민사회 정신]이라고 규정한다면,

다시금 그리스 민주정 이후 최초로 다시 역사상 구현되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 직접민주주의 이념은 현실과 조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토크빌의 시민사회론과 직접민주주의의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시민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최갑수. 2003.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Anderson, P. 1974.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Verso, 김현일 외 역. 1996.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소나무.
- Aminzade, R. 1995. “Between Movement and Party: The Transformation of Mid-Nineteenth-Century French Republicanism” in Jenkins, Craig and Klandermans, Bert 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Comparative Perspectives in States and Social Movements*, London: UCL Press.
- Bardi, B. & Birnbaum, P. 1982. *Sociologie de l'Etat*, Paris: Grasset.
- Bardout, J.C. 2001. *L'histoire étonnante de la loi 1901*, Lyon: Editions Juris service.
- Barthélemy, M. 2000. *Associations: Un nouvel âge de la participation?*, Paris: Presses de Sciences-po.
- Defrasne, J. 1995. *La vie associative en France*, Paris: PUF.
- Marx, K. [1851] 1997. *Le 18 Brumaire de Louis Bonaparte*, Paris: Editions Mille et une nuits.
- Mouriaux, R. 1992. *Le syndicalisme en France*, Paris: PUF.
- Nicolet, C. 1982. *L'idée républicaine en France (1789-1924)*, Paris: Gallimard.
- Raffarin, J.P. 2002. *Pour une nouvelle gouvernance*, Paris: L'Archipel.
- Rosanvallon, P. 2004.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 : La société civile contre le jacobinism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 Rousseau, J.J. [1762] 2001. *Du contrat social*, Paris: GF-Flammarion.
- Soboul, A. 1989.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UF.
- Tarrow, S. 1998, *Power in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s Press.
- Tocqueville, A. [1835] 1981.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Tome I, Paris: GF-Flammarion.
- _____[1840] 1981.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Tome II, Paris: GF-Flammarion.
- _____. [1856] 1988.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GF-Flammarion.
- Touraine, A. 1999. *Comment sortir du Libéralisme*, Paris: Fayard.

